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65
----------	-------

발의연월일 : 2026. 5. 26.

발 의 자 : 손 솔 · 전종덕 · 용혜인
정혜경 · 윤종오 · 전진숙
임미애 · 윤준병 · 김종민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본 투자와 기업 육성 등 ‘산업·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K-콘텐츠 성장의 주역인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산업종사자의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의 대표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문화산업종사자”란 문화산업에서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한 보수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 중 “등이”를 “및 문화산업종사자 등이”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3(노사정협의체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

여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문화산업종사자를 대표하는 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협의체(이하 “노사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사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의 산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의 진흥과 문화산업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중·장기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노사정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1.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21. (현행과 같음)</p> <p>22. <u>“문화산업종사자”란 문화산업에서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절한 보수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u></p>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생략)

④ (생략)

<신설>

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및 문화산업종사자 등이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노사정협의체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문화산업사업자, 문화산업종사자를 대표하는 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협의체(이하 “노사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사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 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표준 임금의 산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의 진흥과 문화산업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중·장기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노사정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